

문서번호 : JAKEG-2024-001

2024. 03. 13

수 신 : 전자인감 날인문서 발송 대상 기관 및 협력사

제 목 : 전자인감 날인문서 활용가능성 사전 조사

귀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당사는 전자서명법 등에 의거하여, 전자인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관련하여, 전자인감 활용가능성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관(사)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요청사항

(1) 전자서명 문서 수취 여부 (Yes or No)

* 실물 법인인감 날인 대체

(2) 전자서명 문서 수취시 비대면 접수 여부 (Yes or No)

- 방문없이 이메일 제출 가능

(3) 전자서명 문서 수취시 제반 증명서 요구 사항

- 날인이력 증명서 (첨부3 참조) 등

2. 회신 요청 일정 등

(1) 회신 기한 : '24.3.15(금) 이내

(2) 회신 방식 : 양식의 구매 없이 자율 작성 또는 유선 연락

(3) 회신처 : 배시원 책임매니저 (TEL : 02-746-4881, E-mail : siwonbae@hdec.co.kr)

첨 부 : 1. 전자인감 법적효력 ----- 1부.

2. 전자인감 날인문서 예시 ----- 1부

3. 날인이력 증명서 예시 ----- 1부.

4. (기사)인감증명서 디지털 대체 ----- 1부.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영준



첨부1. 전자인감 법적효력

전자인감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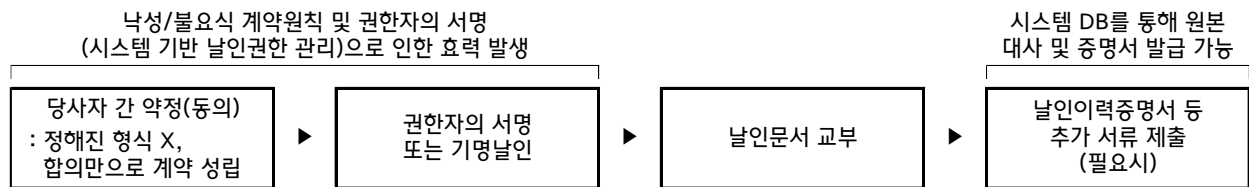
◎ 전자서명법 (2021.10.19 일부개정, 2022.10.20 시행)

제2조 제2항 (정의)	→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1.10.19 일부개정, 시행 2022.10.20)

제4조 제1항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인감 날인 및 교부 프로세스



*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 불요식계약 : 계약 성립 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첨부2. 전자인감 날인문서 예시

위 임 장

○○○ 귀중

대 리 인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직원
위 임 내 용	○○○○ 업무 전반			

위 내용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03월 일

회사명(본인) : 현대건설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01 - 81 - 1629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문서식별번호 부여
(시스템 DB의 발행 이력과 대사 가능)

날인별 고유식별번호 부여

2n354vfid345kj3421



Publish Date : 2024-03-06 15:30:28 Publish No. : 65421345314654532144513462465321345131512

첨부3. 날인이력 증명서 예시

날인이력 증명서

요청명 TEST_20240306

요청번호 JAKE01234567890

요청부서 00본부 0000팀

요청자 000 매니저

위 입 장

○○○ 양동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	****-****
	주 소	○○○○○○○	본인(또는) 관계	직명
위 양 내 용	○○○○ 양동 양반			

위 내용을 대위양정해 회입합니다.

2024년 09월 일

회사무장(인) : 박재갑(공무수석직)
사무담당전화 : 191 - 81 - 18293
주 소 : 서울시 용문구 개동 140-2

인감 정보

인감구분	담당자 부서	날인용도	인장 이미지
법인인감	0000팀	위임장	 

승인 이력

접속 IP	접속 일시	접속자(사번)	진행 내역
152.192.16.1	2024-03-05 16:30:57	000 매니저 (1500012)	TEST_20240306 날인 요청
163.181.24.1	2024-03-06 15:30:28	000 책임매니저 (0810011)	TEST_20240306 날인 승인

날인 대상서류

서류	페이지
TEST_20240306_1(사용인감계).xlsx	TEST_20240306 날인 요청
TEST_20240306_2(위임장).pdf	TEST_20240306 날인 승인

Secure Minds
Secure Finds



본 문서는 현대건설(株)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Unauthorized copying and reproducing is subject to the company regulations and related laws.

Publish Date : 2024-03-06 15:30:28 Publish No. : 65421345314654532144513462465321345131512

문서식별번호 부여
(시스템 DB의 발행 이력과 대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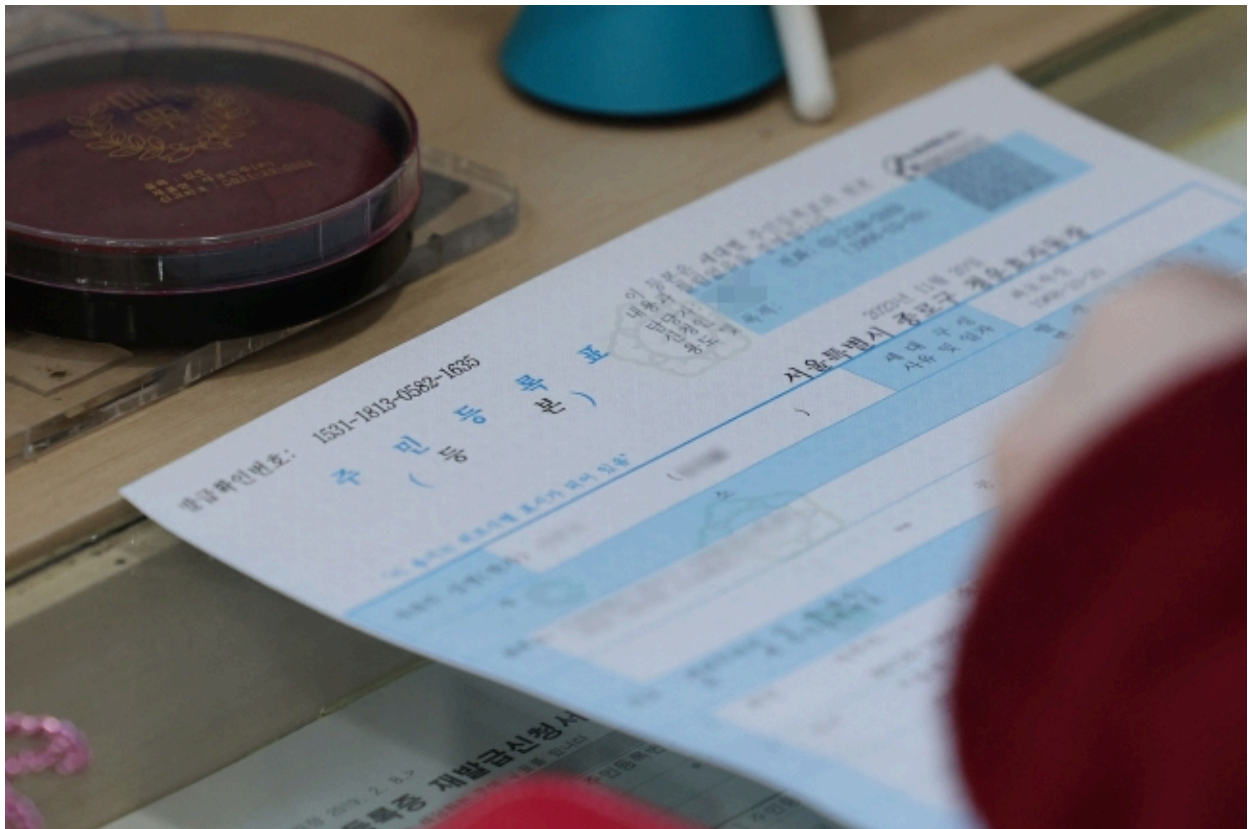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대체 추진...주민센터 찾아갈 필요 없어진다

입력 2024.01.30. 오전 10:50 수정 2024.01.30. 오전 11:12

도입 110년만에...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디지털 혁신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간편인증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고, 민원을 내는 등 공공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안에 따라 2026년까지 3년 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올 4월부터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종의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시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연만 30만건 신청)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 신청)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예방접종비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서비스 321종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연 200만건 신청)이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에서 필요한 발급 서류 등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실시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뉴스

또, 2025년까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을 디지털로 대체한다. 1914년 도입한 인감증명서 제도가 11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했는데 내년부터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법원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것이

다.

자동차를 팔 때는 인감증명서를 간편인증으로 대체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사무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며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준현 기자 01052803806@chosun.com

Copyright ©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3890>
